



##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1.3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32호, 2014.1.3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강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[개정 2002.6.7.,2014.1.3.]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"특별수강생"이라 함은 본교 학사·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자격)** ① 학사과정 특별수강생은 국내·외의 정규대학 정규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.  
② 석사 및 박사과정의 특별수강생은 당해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.

**제4조(입학)** 특별수강생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학과(부)의 서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. 다만,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5조(수강허가)** 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수강은 소속대학(원)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하되, 학위과정별로 2개 학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6조(정원)** 특별수강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(부)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. 다만,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와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7조(수강증명)** 특별수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**제8조(수강료 등)** ①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 또는 계절수업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 
② 수강료는 당해학기 재학생의 납입금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[개정 2009.8.7.,2014.1.3.]  
1. 수강료 = 수업료×수강학점수÷수강신청기준학점수(학사과정 : 18학점, 대학원과정 : 12학점)  
2. [삭제 2014.1.3.]  
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 
④ 계절수업만을 위한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.  
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기당 취득학점)**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2학점, 대학원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
**제10조(수강허가취소)** 특별수강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규정)**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**부칙** <제1932호,2014.1.3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